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배우자의 재혼 관련 예외 신설 〉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05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배우자의 재혼 관련 예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9. 16.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배우자의 재혼 관련 예외 신설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재혼을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생략) 2. <u>재혼하였을 때</u>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 5. (생략) ② (생략)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배우자인 수급권자(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한한다)</u> <u>가 재혼하였을 때</u>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사항

□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

- 현행법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²⁾에게 유족연금³⁾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은 총 335명으로, 그 중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319명으로 대부분 (95.2%)을 점유하고 있고, 2025년 10월 말 기준 연간 유족연금

-
- 1)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퇴직급여) 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1. 65세가 되었을 때
 - 2.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상태가 된 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가 사망할 때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③ ~ ⑨ (생략)
-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족”이란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 라. 손자·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에 출생한 손자·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3)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3(유족급여) ①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사람이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② ~ ⑦ (생략)

지급액은 41억 2,300만원(1인당 연 평균 지급액은 1,230만원) 가
 량임.

<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2025.10.기준)>

(단위 : 명, 천원 / 2025년 10월 말 기준)

구 분	배우자	자 녀	부 모	합 계 (A)	지급총액 (B)	1인당 연 평균 지급액(B/A)
대상자	319(95.2%)	6(1.8%)	10(3.0%)	335	4,122,994	12,307

*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11.)를 재구성

- 현행법 제27조의4⁴⁾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
 람이 ①사망하였을 때, ②재혼하거나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
 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③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19세가 되
 었을 때,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
 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그 수급권은 상
 실됨.⁵⁾

□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 배우자의 재혼 관련 예외 신설

- 「별정우체국법」에서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의 피부양자에게

4)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5) 2022년 이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례는 2022년 6명, 2023년 4명, 2024년 4명, 2025년 10월 2
 명으로 모두 법 제2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사례였음.

지급되고 자녀 등의 경우는 일정 정도의 장애가 없으면 19세가 되면 수급권이 상실되는 등 사망 당시의 혼인관계나 생계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므로,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 이후 그가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별정우체국 직원과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연금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임을 고려하면, 유족연금은 배우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 유족연금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에 중점을 두게 되면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불합리한 재산권 침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위헌법률심판에서 소수의견(재판관 4인)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재혼한 배우자의 재혼 이후의 생활능력이나 부양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재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⁶⁾

○ 배우자 재혼 시 유족급여수급권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6)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제1항제2호 위헌제청(헌재 2022.08.31. 2019헌가31): 합헌의견 5인, 위헌의견 4인으로 합헌 결정

비록 배우자의 기여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산재보험의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연금지급을 중지하되 일정부분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재혼 후 다시 이혼하는 경우 지급을 재개하는 등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배우자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여부 해외 사례 >

구 분	해당 국가
연금계속지급	벨기에, 덴마크 *덴마크 : 배우자연금을 10년동안 지급하거나 평균 은퇴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결국, 재혼 시 계속 지급된다고 해서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님
연금중지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페인: 특정조건(소득, 연령, 장애)이 있을 경우 부분/완전연금 지급 가능 *스웨덴: 새로운 결혼이 해소되거나 10년 이내 이혼/무효선언이 되면 다시 지급 가능
연금중지, 일시금지급	오스트리아, 칠레,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오스트리아: 재혼 시 월연금액의 35배를 지급(전 배우자도 동일하게 적용). 단, 본인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 재혼이 해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는 다시 연금지급 가능 *칠레: 2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프랑스: 배우자연금의 3년치 일시금을 지급. 단, 자녀연금을 받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연금이 중지되기까지는 배우자연금도 지급됨 *독일 : 월정액의 24배 일시금을 지급(연금지급월수만큼 감액). 재혼파기 무효일 경우 24개월 경과시까지 일시금의 1/24를 적절히 분할하여 공제 *이스라엘: 36개월치 연금을 두 번(결혼시, 2년후) 일시금으로 지급 *멕시코: 3년치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자료: 박은주(2020), 「유족급여 지급실태 분석」,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p.137

- 한편, 현행법상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 등의 일정부분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할연금⁷⁾의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상실되지 않아 유족연금은 이에 비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유족연금도 배우자의 재혼을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재혼 시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유지시키는 문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재산분할적 성격이 강한 분할연금과 부양적 성격이 강한 유족연금은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에 분할연금과 같은 요건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분할연금은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요하고 퇴직연금 등의 수급개시연령인 65세가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나, 부양적 성격이

7)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0(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직원으로서 재직 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강한 유족연금은 혼인기간에 관계 없이 직원의 사망 당시 재직 중 혼인한 배우자는 수급권이 인정되고 연금의 개시 시점 또한 직원이 사망한 날 다음 달부터 개시됨.⁸⁾

- 둘째,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 재혼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양관계가 형성되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그 유족연금이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되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통한 부양이 필요한 다른 권리의무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셋째, 개정안과 같이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재혼을 배제하지 않고도 ①재혼 시 그 배우자에게 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②재혼의 파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수급이 재개되도록 하는 방안, ③재혼을 통한 생계유지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신설 등 보완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을 채택할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타 공적연금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공적연금 간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감안하여 동 개정안과 함께 공적연금 전체에서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8) 「별정우체국법」 제24조의2(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한다.

- 현재 타 상임위원회에 같은 취지의 법률안⁹⁾들이 계류되어 있어 해당 법률안의 심사 경과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유족연금도 분할연금과 같이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연금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재혼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시키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유족연금 운영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유족연금은 생계를 책임진 직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보장을 목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연금의 수급요건·기간·수금액 등 차이를 두고 있는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 이후에 타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각 연금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함.

9)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①「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8호), ②「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99호), ③「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1호),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03호)

<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제도 비교 >

	유족연금	분할연금
지급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상속순위에 따름)	이혼한 배우자(단, 5년 이상 혼인기간 유지한 경우) * 이혼한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지급금액	퇴직연금의 60%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수급권 상실	사망, 재혼, 친족관계 종료 시 등	사망 시
연금 성격	유족의 생계보장(사회보장적 성격)	배우자의 재산보장 성격

*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1.

문 의 처
02)6788-5235